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3가합88199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10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717,694,9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. 5. 1.부터 2024. 1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C은 2018. 5. 1.부터 2023. 10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: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실질적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)

재판장판사고승일

판사임효빈

판사정예

별지